산업통상자원부 「제조업」르네상스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9월 17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17(화) 오전 11:0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09. 16(월)	담당부서	입지총괄과
담당과장	조웅환 과장(044-203-4430)	담 당 자	김시덕 사무관(044-203-4455)

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!

-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化 등 근로·정주 환경 제도개선 -

【시행령 개정 개요】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**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**되었다고 밝힘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가 그간 **제조업**과 **생산시설 중심**의 배치·관리되고 **노후화** 등으로 **편의·복지시설** 등이 **부족**하여, **청년들**이 **취업**을 **기피함에 따라,**

○ 상기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**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**」을 발표('18.3.22)하고, 이에 포함된 **제도개선**의 **일환**으로 이루어짐

【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】

1 산업단지 **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화**(안 제6조제6항)

○ 근로자들의 **편리한 근로·정주환경**을 **조성**하기 위해 **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**을 지원기관에 포함하여 **산업단지** 내 **입주를 허용함**

* (현행) 판매업, 창고업,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 가능(열거형)
(개선) 제조업, 농·임·어업,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 입주 가능(네거티브)

2 **지식산업센터** 내 **지원시설 설치면적 확대**(안 제36조의4제4항)

○ 산업단지에 위치한 **지식산업센터***에 **설치 가능한 지원시설****의 **면적**을 건축 연면적의 20%에서 **30%**(산업시설구역), **50%**(복합구역)**로 상향함**

* 제조업, 지식산업,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(구(舊) 아파트형 공장)

**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·보험·교육업 등을 하기 위한 시설, 물류시설, 어린이집·기숙사, 운동시설, 상점 등

3 **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법 합리화**(안 제58조의5제1항 및 제4항)

○ **복합구역***으로의 **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**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**실질적 용도변경**이 발생하는 부분에 **한정**하여 산정하고,

* 산업·지원·공공시설이 하나의 용지에 입주 가능한 구역(산업용도 50% 이상 사용 의무)

- **비수도권**에서 시행하는 **구조고도화사업**의 **개발이익 재투자*** **비율**을 **12.5%** (현행 25%)로 **하향** 조정함

□ 이번 조치로, **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, 레저시설, 펍(pub)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**됨

○ 더불어,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

【향후 계획】

□ 금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으로, **산업시설구역**에 **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지역(존) 도입**도 연내 개선할 예정*임

*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(7~9월) → 법제처 심사 및 국무·차관회의 상정(10월) 추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시덕 사무관 (☎ 044-203-440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